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3033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나303389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 25 선고 2022가단325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휘덕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각연

변론종결 2024. 7. 17.

판결선고 2024. 9. 2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 25. 선고 2022가단325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C과 피고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9. 10. 2. 접수 제449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각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지분의 실제 매매계약일이 2019. 5.초순경이고 그 당시에는 C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지분의 실제 매매계약일이 2019. 5.초순경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인 2019. 10. 1.을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본다. 한편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3차변론기일에 ‘2019. 10.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제1심판결 제4면 6행부터 제7면 아래에서 8행까지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9. 5. 초순경 C과 사이에 구두로 이 사건 각 지분을 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9. 5. 3. S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C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① 2019. 5. 10. J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고, ② 2019. 5. 28. 주식회사 K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③ 2019. 7. 1. C의 요청에 따라 C의 지인으로서 석산개발업을 하는 T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④ 2019. 7. 3. S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C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U과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6, 15,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① 2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매하면서 즉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통상적 매매계약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1심에서는 1억 6000만 원, 이 법원에서는 2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다시 2억 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한 후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통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매매대금, 매매일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10여년 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C을 알고 지낸 사이인 점, 피고는 C과는 2018.경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부동산 임대업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고는 C의 요청으로 C과 주식 또는 사업 양수계약 등을 체결한 자에게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C은 이 법정에서 '3-4회에 걸쳐서 사업을 투자를 하면서 돈을 빌리게 되었다. 그런데 회수가 바로 바로 일어날 줄 알았는데 바로 바로 회수가 안되고 아직까지도 일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안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상황이 늦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양도를 해가라고 했다. 뭐 할때마다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바로 갚지를 못하니까 1/3지분 이거를 그대로 넘겨줬다'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C에게 '처음에 양도해놓고 5000만원, 5000만원, 4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대금을 4차례 준 게 아니고, 몇 차례 돈을 가져갔다가 수익이 만나서 이걸 변제 못하고 있는 사이에 못하고 계속 끌수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넘겨줬다. 일단 융통을 받아놓고 J, V, T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사업이 옹게 안돼서 그걸 빨리 변제를 못해서 그럼 이거라도 이제 넘겨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마지막에 넘겨주니까 당연히 등기는 뒤에 갈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가 위 증언과 같이 C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었다면 더욱이 피고는 C의 재산상태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신안재, 판사 이재덕